

## 2017년도 온천종사자교육 통지

문서번호 : 온협17-210

2017. 5. 2

수 신 : 온천종사자(대표)

온천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·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7년도 온천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며, 사이버교육이나 집합교육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■ 교육내용

○ 교육시간 : 4시간(년1회)

- 온천법(행자부)2시간, 온천운영(협회)1시간, 공중위생관리(지자체)1시간

■ 사이버(온라인)교육

○ 정회원에 한하여 이수 가능(2017. 6. 14 ~ 12. 15)

- 정회원 : 협회홈페이지에 회원등록하고, 당해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온천종사자

■ 집합교육 : 정회원이 아닌 온천종사자(다음 집합교육 중에서 택1)

구분	일 시	세부장소	비고
1차	5월 10일(수)	취 소	
2차	6월 14일(수)	대구문화예술회관 [대구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(성당동)]	
3차	온천대축제 행사(10월)	동래구청 대회의실 [부산시 동래구 명륜로94번길 55(북천동)]	추후재통보
4차	11월 15(수)	대전시민대학 [(구)충남도청] [대전 중구 중앙로 101(선화동)]	
시간	집합교육 당일 14:00~18:00 [4시간]		
교육비	○ 교육비 30,000원- 계좌입금 [신한은행 140-009-424040 (특)한국온천협회] - 계좌입금시는 온천명으로 입금(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) - 정회원(당해연도 연회비 납부)은 교육비 면제 ※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)		

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



**온천법 제26조(온천종사자 교육)**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营业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,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○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.

○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, 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바랍니다.

※ 교육 불참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온천법 제37조)